



## 입주기업 지원사항

구 분	지 원 내 용
<p>국내기업 이전비 지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북도와 소재기업이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여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시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토지구입비 포함하여 건축비, 시설장비구입비,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문에 대한 5% 범위안에서 50억원 이내</li> </ul> </li> <li>• 타시도 소재하는 본사, 연구소, 생산자 서비스업 이전에 따른 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3% 범위안에서 2억원 이내</li> <li>- 건물임대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 50% 범위안에서 3년간 기업당 2억원 이내</li> <li>- 신·증설에 따른 시설장비 설치구입비에 대하여 투자금액 3% 범위안에서 2억원 이내</li> </ul> </li> </ul>
<p>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제지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세(소득세 또는 법인세)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4년간 50% 감면(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)</li> </ul> </li> <li>• 지방세(취득세, 재산세)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취득세 75%감면</li> <li>- 재산세 75% 감면(5년)</li> </ul> </li> </ul>
<p>금융지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소기업진흥공단, 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입주기업체에 자금지원(토지, 설비, 운영자금 등)</li> </ul> </li> </ul>
<p>국내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지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내 거주자를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명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(2억원 이내)</li> <li>-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되는 인원에 한하여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
<p>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내용 : 융자 추천 및 이자 3% 보전 지원</li> <li>• 산업자금(운전자금 + 설비자금)</li> <li>• 지원한도 : 매출액의 1/2범위 이내, 업체당 최대 2억원</li> <li>• 융자기간 : 2년 이내</li> </ul>
<p>청년 및 중장년 취업지원사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 업 : 관내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</li> <li>- 취업자 : 도내 거주(주민등록지 기준) 만 18~39세(청년) 및 만40~59세(중장년), 미취업자</li> </ul> </li> <li>• 지원기간 : 12개월(수습기간 3개월, 정규직 전환 후 9개월)</li> <li>• 기업지원금 : 65만원/월·인(청년), 70만원/월·인(청년)</li> </ul>

※ 농공단지 입주기업 혜택

-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과 규격 등 기준이 같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가능 [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24조 제2항 ]